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7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조계원 · 최혁진 · 허성무
윤준병 · 임오경 · 이정문
김 현 · 김우영 · 이성운
정진욱 · 한준호 · 복기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문화기술”이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가공·유통·이용·보존·복원·사업화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의 제공에 활용되는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 및 그 융합기술을 말한다.

제2조제16호 중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문화기술”로 한다.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문화기술의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기획·공고·선정·협약·점검·평가
·정산·성과관리
2.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연구지원
3.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실증·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4. 문화기술 관련 통계·조사·분석 및 정책연구
5.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기술지원
6. 문화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7.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및 교류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평가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 21. (생략)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17. ~ 21.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3(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

원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문화기술의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기획·공고·선정·협약·점검·평가·정산·성과관리

2.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연구지원

3.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실증·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4. 문화기술 관련 통계·조사·

분석 및 정책연구

5.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기술지원

6. 문화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산학연 공동
연구·기술제휴

7.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국
제협력 및 교류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평가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